

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- 미래사법자문위원회, 헌법자문위원회, 통일사법연구위원회,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의 조사위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채용 조건, 임용 절차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에 사법정책·제도개선·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·수집·분석·번역 업무 등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7조의2제1항제3

호 및 제4호)

-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, 임용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7조의2제7항 신설)

4.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,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.

1.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·수집·분석·번역 업무
2.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
3. 사법정책·제도개선·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·수집·분석·번역 업무 등
4.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

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,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법원공무원규칙」,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을 우선

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,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법원공무원규칙」,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을 우선 적용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-1216